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7405

2019년 8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고려와 조선시대 부마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장 현 국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려와 조선시대 부마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son-in-law of the king between Koryo and Chosun dynasty

201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장 현 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려와 조선시대 부마 비교 연구

지도교수 이정선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장 현 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현국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기길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성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정선 (인)

201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Ⅰ. 머리말 ····· 1

Ⅱ. 고려시대 부마 ····· 4

1. 왕족으로서 부마 ····· 4

2. 왕족봉작제하 정치·경제적 지위 ····· 12

Ⅲ. 조선시대 부마 ····· 17

1. 신료로서 부마 ····· 17

2. 봉군제 개편과 폐지에 따른 예우와 규제 ····· 25

Ⅳ. 고려와 조선시대 부마 비교 ····· 32

Ⅴ. 맺음말 ····· 36

참고문헌 ····· 3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1> 고려시대 공주 혼인관계 ····· 7

<표2> 『고려사』 「백관지」 작조의 식읍규정 ····· 14

<표3> 왕자 및 부마 식읍 지급 내역 ····· 14

<표4> 『고려사』 종실 녹봉 규정 ····· 16

<표5> 태종의 부마와 부마의 부친 ····· 20

<표6> 세종-문종의 부마와 부마의 부친 ····· 22

<표7> 세조-예종의 부마와 부마의 부친 ····· 23

<표8> 성종의 부마와 부마의 부친 ····· 24

<표9> 『경국대전』 「호전」 녹과조를 토대로 본 부마의 녹봉 ····· 29

<표10> 고려와 조선 부마의 지위 비교표 ····· 32

<표11> 고려와 조선 왕실 구성원의 신분 ····· 3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son-in-law of the king between Koryo and Chosun dynasty

Chang Hyun-Guk
Advisor: Prof. Lee Jung Sun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Buoma(royal son-in-law) refers to the husband of a princess who married a royal woman. The term which originated from the title of the Chinese public office, the Buoma was used until in Koryo and Chosun.

In Koryo Dynasty, the royal family strengthen its solidarity through practising endogamy. However,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king's sons, Buoma succeeded to the throne from King Gwangjong to King Mokjong.

Since King Hyeonjong became a king after King Moonjong, royal son-in-laws lost the right to the throne and were reduced to a subject of respect as members of royal family by the implementation of investiture with the titles of nobility. Until the end of Koryo Dynasty, the marriages of princesses were the endogamy within the royal family.

In the Chosun Dynasty, the Buoma was only a son of a common nobleman, not a royal family any more, whose stature ended up being reduced beyond comparison with that of the Koryo Dynasty.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Buoma varied depending on the personality of the royal daughter's to be father-in-law, the relationship with the king, the political situation and so on.

Koryo sealed the royal family with duke, marquis, and counts, and gave Marquis to the princes, gave Conuts to Buomas, and Marquis to the father-in-laws, which were not inherited.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investiture with the titles of nobility ' system for the 26th year of King Sejong was abolished, and after King Seongjong's reign, government posts were granted below the commandant.

King's daughter's-Buoma's sons, were able to take exams and ente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government service. They were given the government posts of “Donnyeongbu”.

Buma’s remarriage had not been allowed since the early Chosun Dynasty because of his reponsibility to hold a merorial service for his dead wife as a princess.

This paper tried to figure out the process of changing the status of the Buoma by comparing the condition of the Buoma during the Koryo and Chosu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머리말

부마란 왕의 사위를 일컫는 말로 왕녀와 혼인한 사람, 공주·옹주의 남편을 의미한다. 부마라는 명칭은 중국의 부마도위라는 관직명에서 유래한 말로 한무제(漢武帝)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위(魏) 진(晉)대 이후부터 공주와 혼인한 자에게 그 관직을 맡긴 것에서 유래되었다.[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마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고구려 때부터이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왕의 사위를 부마라 칭하였다.[2)] 다만 조선 초 제도를 정비해가던 과정에서 세종 13년(1431)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이 "부마는 황제의 사위를 뜻하기 때문에 마땅히 조선에서는 그 칭호를 쓸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자, 세종 16년(1434) 국왕의 사위를 뜻하는 용어를 의빈(儀賓)이라 정하고 이를『경국대전』에 반영하였다. 하지만『조선왕조실록』에는 의빈보다 부마라는 명칭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3)] 조선 후기까지도 부마와 의빈은 혼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왕의 사위를 부마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고려와 조선은 세습된 왕이 다스리는 왕조 사회였다. 왕은 왕이라는 지위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통치권을 보장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 호족 또는 귀족 관료집단에 대한 원활한 통솔을 통해서 왕위를 유지하며 통치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왕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실 세력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였다. 호족 및 귀족 관

---

1) 이유경, 1985,『조선초기의 부마』,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주1) 재인용
중국에서의 부마도위직은 한 무제때에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위진대에 이르러 상공주자를 모두 부마도위에 배수하고 어마(御馬)를 장악(掌握)하게 하였으므로, 송. 양. 진. 후위. 북제 역시 이를 따라 공주와 결혼한자에게 이 직을 배수하였다. 수(隋)대에는 잠시 폐지되었으나 당. 송대 이후 다시 시행되었다.『연감유함』권 106, 부마도위

2) 국사편찬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사 검색 서비스에서 부마로 조회한 결과 원문 41건이 검색되었다. 검색 결과의 대부분(36건)이 원 간섭기 이후에 기록된 내용인 점을 보면 원 갑섭기 이전 부마라는 명칭을 사용한 예는 거의 없다. 이는 고려 왕실혼이 족내혼의 형태를 취했고, 부마가 된 사람은 왕의 아들이거나 종실의 자손이었기에 그 이름이나 작위가 부마가 되기 이전에 사료에 표기되어져 있었고, 혼인 후 진급된 작위 등으로 표기 되었기에 사료에는 부마라는 명칭이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려는 중국 문물을 받아들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마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부마의 명칭으로 다른 것을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왕녀와 혼인한 사람을 부마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3)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검색 서비스에서 키워드를 부마로 검색하면 601건, 의빈으로 검색하면 455건이 검색되어 진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료들과의 혼인은 왕실세력의 확장과 동시에 위협세력의 견제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므로 왕권의 강화와 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왕실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편 관료 집단의 측면에서 보면 왕실과의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통치권자와의 혈연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다른 집단과의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그들의 세력 기반의 확대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4)]

개국 초기는 왕실이 통치권을 확보하며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시기로 왕위계승과 왕권 장악을 둘러싸고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건국 초기에는 왕위계승이 순탄치 않거나 무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즉위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왕위 계승과정에서는 이미 혼인을 맺은 가문과 그 지원세력을 활용하며, 즉위 후에는 집권에 협력한 인물이나 유력한 인물과의 혼인을 맺음으로서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였다.[5)] 그러나 왕권이 안정화 되면 부마를 포함한 측근들은 왕의 지위를 위협하거나 혹은 물의를 빚어서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기도 하였기에 이들은 관리와 견제의 대상이었다.

왕조사회가 아닌 현재 대통령제인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도 왕조시대 왕 만큼은 아니지만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역대 대통령의 자제나 친인척, 측근 등에서 발생한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 문제 제기와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라는 통치권 약화로 이어졌다. 이렇듯 권력의 최측근의 문제는 권력 상실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 올 수 있기에 왕조시대뿐만 아니라 현재 대통령제에서도 측근의 관리 문제는 화두 중의 하나이다. 왕조시대 왕실의 최측근이지만 사료 속에 잘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 통제되었던 부마를 통해 우리 현시대에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부마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김은영, 이유경, 한충희, 신채용 등의 논문이 있다. 김은영은 왕실혼인과 왕위계승관계를 통한 고려초기 부마의 성격과 고려중기(현종-의종)의 부마가계의 형성 및 부마의 지위(봉작, 식읍 등)와 자격에 대해 연구하였

4) 정재훈, 1996,「조선초기 왕실혼과 왕실세력의 형성」,『한국사연구』, 95, 59-108. 59쪽
5) 정재훈, 위의논문, 93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6] 이유경은 조선시대 부마 관부인 의빈부의 성립과 부마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마의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해 연구하였고,[7] 한충희는 조선초기 의빈의 출신 성분 분석과 의빈제의 정비, 의빈의 정치활동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8] 신채용은 영조대 탕평정국과 부마 간택과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고,[9] 단행본『조선 왕실의 백년손님』을 통해 조선 개국 초 정치 참여가 가능했던 시기부터 정치 참여를 배제당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부마에 대한 인물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부마 연구와 같이 시대 분절적인 부마 연구 방법이 아니라, 왕실혼와 봉작제 실시라는 두 축으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부마를 비교 분석하여 좀 더 입체적으로 부마의 신분과 지위의 변화에 대해 밝혀보고 권력자의 부마에 대한 관리 통제 방법을 고찰해 봄으로써 현 시대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본문은 2장으로 나누어 Ⅱ장에서는 고려시대를 Ⅲ장에서는 조선시대를 다룬다. Ⅱ장은 고려 초 족내혼 시기의 부마 지위와 고려의 대내외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이성혼의 시작과 왕족봉작제의 시행에 따른 부마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논하고, Ⅲ장은 조선시대 왕실 족내혼이 근절되고 일부일처제의 이성혼 확립에 따른 조선 왕실 정비 과정에서 부마의 지위 및 경제적 예우 그리고 정치적 규제 등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부마의 지위 변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6) 김은영, 2002,「고려 중기의 부마」, 숙명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 이유경, 1985,「조선 초기의 부마」,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8) 한충희, 1996,「조선 초기 의빈연구」,『조선사연구』5, 조선사연구회.
9) 신채용, 2009,「영조대 탕평정국과 부마 간택」,『조선시대사학보』5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고려시대 부마

1. 왕족으로서 부마

한국 역사에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다같이 중시하는 양측적(兩側的) 친속제도(親屬制度)하의 동성친족간의 족내혼(族內婚)이 빈번하였다. 고려시대 대부분의 친족집단은 본관과 거주지가 일치하였기에 각 지역의 토성들은 동성동본 혼인이나 교환혼이 적지 않았다. 솔서제(率壻制)처럼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는 것도 흔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재혼도 제도상이나 관념상으로도 금기시되지 않았으며 적서의 차별이나 처첩의 차별도 많지 않았다.[10]

고려의 태조는 혼인을 통하여 호족과 왕실을 규합하려 하였다. 태조(재위 918~943)는 통일 대업을 이루기 위해 정략혼을 통해 호족 세력을 규합하였으며 29명의 비를 맞이하였다. 이는 통일 후 그 29명의 비(妃)를 따르는 세력들 간 권력쟁탈전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권력쟁탈전은 태조 사후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극심해졌는데 왕위가 적장자(嫡長子)를 통해 계승되지 않고 형제 간 상속으로 이루어진 2대 혜종(惠宗, 재위 943~945) 이후 3대 정종(定宗, 재위 945~949)과 4대 광종(光宗, 재위 949~975)의 즉위 과정에서 극심한 세력 분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력 분쟁의 결과 나말여초의 수많은 호족세력 중 상당수의 호족세력은 탈락되어 갔고 중요 정치세력으로 남은 집단은 태조 3비 신명왕후 충주 유씨(劉氏)계와 태조 4비 신정왕후 황주 황보씨(皇甫氏)계 그리고 여기에 협력하는 일부 호족들이었다.

태조는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왕실세력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셋째 아들인 광종의 족내혼을 실시하였다.[11] 광종의 제1비는 태조와 태조의 제4비인 신정왕후 황보씨 사이의 소생 공주다. 광종의 제2비 경화궁부인 임씨는 혜종의 공주며 혜종의 재위기간에 혼인하였다. 이러한 족내혼을 통한 모계세력

10) 신명호, 1999,「조선초기 왕실 편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8쪽.
11) 정용숙, 1987,「고려왕실 족내혼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의 협력은 훗날 광종이 즉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12)]

왕실 족내혼은 왕위 계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족내혼은 신라의 유습이라 볼 수 있는데 족내혼으로 인해 신라의 경우에는 왕자뿐 아니라 사위인 부마까지 왕위 계승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는 남해와 석탈해의 예,[13)] 박혁거세가 알영씨족(閼英氏族)의 거서간(居西干)이라 한 예, 김씨인 미추(味鄒)가 석씨(昔氏)인 감분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예, 내물왕과 실성왕(實聖王)이 미추왕(味鄒王)을 계승한 예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신라는 왕의 아들과 사위를 구별하지 않고 왕위계승권자로 인정하였다.[14)]

고려시대에도 왕실 동성 족내혼을 통해 부마가 왕위 계승권자로 인정되고 왕이 된 사례가 있었다. 고려 5대~8대 왕인 경종(景宗, 재위 975~981), 성종(成宗, 재위 981~997), 목종(穆宗, 재위 997~1009), 현종(顯宗, 재위 1009~1031)은 부마로 왕위를 계승하였다.[15)]

부마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친 동성 족내혼의 한계성 때문이었다. 광종은 즉위 후 왕권강화를 위해 왕실의 여러 왕자와 호족들을 숙청하였고, 근친 동성 왕족으로 족내혼을 실시하였다.[16)] 이러한 근친 족내혼을 통해 경종은 1명의 왕자밖에 얻지 못하였다. 성종은 광종녀와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고, 타성 왕비에서 2명의 공주만 있었다. 태조의 증손대인 목종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듯 세대가 내려갈수록 자녀수가 감소되어 왕위를 계승할 인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양측적 친속제도 하에서 부계와 모계 모두 왕족이어야 왕위계승권을 인정하는 제도에 의거해 광종 이후 목종까지 부마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17)]

하지만 현종의 즉위를 기점으로 혼인에 유교적 입장이 반영되기 시작하며 부마가 왕위를 계승할 수는 없게 되었다.[18)] 목종 말 목종의 자식이 없어 왕위를 계승

12) 김은영, 2002,「고려중기의 부마」, 숙명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쪽.
13)『삼국유사』권 1 紀異 1 第三 弩禮王
14) 김은영, 위의 논문, 6쪽.
15) 정용숙, 1987,「고려왕실 족내혼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73쪽.
16) 정용숙, 위의 논문, 72쪽.
17) 정용숙, 위의 논문, 99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할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경종의 4비 헌정왕후와 태조 아들인 안종(安宗) 왕욱(王郁)이 사통하여 낳은 현종(대량군 순)은 황보씨를 모계로 한 왕자로서 유일한 왕위 계승권자이였다. 그런데 목종 6년(1003)에 목종의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김치양과 사통하여 아들을 얻었고 김치양의 소생을 목종의 후계로 삼고자 하였다.[19] 이 같은 목종 말 왕위 계승권 경쟁은 현종을 지지하는 유교적 관료세력과 천추태후의 아들을 지지하는 황보씨를 중심으로 한 왕실 모계세력간의 대립이었다. 김치양의 소생을 후계로 삼는다는 것은 고려 왕성을 왕씨에서 김씨로 바꾸는 것으로 이는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며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볼 때 왕실에 대한 중대한 역모행위로 간주되었다. 강조의 정변을 통해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현종의 즉위로 왕실 내 중심 세력이었던 모계세력은 소멸되고 유교적 관료세력이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20]

현종 즉위 이후 왕실혼과 왕위 계승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왕실 내 혼인에도 유교적인 입장이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거란족의 침입이라는 외부 정세의 변화로 공주절도사 김은부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인 것을 계기로 왕의 이성혼이 시작되었다. 왕의 정비로는 왕실 공주(족내혼)를 맞아들이고 한편으로는 귀족녀(이성혼)를 여타 왕비로 맞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혼인범위의 확대(족내혼+이성혼)라는 특징과 이전까지의 통혼권(모계세력인 유씨와 황보씨 가계와의 통혼)을 부정하는 것으로 왕실 내 중심세력이었던 모계세력의 쇠퇴를 의미한 것이다.[21] 또한 이성혼은 왕위 계승이 부계중심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부계중심으로 모계의 왕족 여부와 관계없이 왕의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22] 덕종 이후부터 의종까지 왕위 계승권자가 모두 귀족녀의 소생자이다. 이 기간 동안 현종의 제2비 소생녀 2명 외에는 종실녀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는 출생되지 않았다.[23]

---

18) 정용숙, 1987,「고려왕실 족내혼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3쪽.
19) 정용숙, 위의 논문, 99쪽.
20) 김은영, 2002,「고려중기의 부마」, 숙명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2쪽.
21) 정용숙, 위의 논문, 92쪽.
22) 정용숙, 위의 논문, 73쪽.
23) 정용숙, 위의 논문, 93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러한 왕실혼과 왕위계승방식의 변화는 부마의 왕위계승권이 박탈되는 등의 지위 축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고려 말까지 공주와의 동성 족내혼을 통해 왕족으로서 지위와 예우는 계속 이어졌다. 고려 말까지 공주의 족내혼이 동성 왕족과 이루어졌음은 사료에 나와 있는 <표1>의 혼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표1> 고려시대 공주 혼인관계 24)

왕대	왕 명	공주수	혼인 관계			
			동성혼	이성혼	미상	계
1	太祖	9	6	2	1	9
2	惠宗	3	1	-	2	3
3	定宗	1	1	-	-	1
4	光宗	3	2	-	1	3
6	成宗	2	2	-	-	2
8	顯宗	8	3	1(?)	4	8
9	德宗	2	1	-	1	2
10	靖宗	1	-	-	1	1
11	文宗	7	2	-	5	7
13	宣宗	3	1	-	2	3
15	肅宗	4	4	-	-	4
16	睿宗	2	2	-	-	2
17	仁宗	4	4	-	-	4
18	毅宗	3	3	-	-	3
19	明宗	2	2	-	-	2
20	神宗	2	2	-	-	2
21	熙宗	5	4	1	-	5
22	康宗	1	1	-	-	1
23	高宗	1	1	-	-	1
24	元宗	2	2	-	-	2
25	忠烈	2	2	-	-	2
28	忠惠	1	-	1	-	1
34	恭讓	3	1	2	-	3
	계	71	47	7	17	71

24) 정용숙, 1987,「고려왕실 족내혼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7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1>에서 태조부터 공양왕(재위 1389-1392)에 이르기까지 사료에 나온 부마와 공주간의 혼인관계 54사례를(미상 제외) 살펴보면, 동성혼이 47사례, 이성혼이 7사례로 동성혼의 경우가 더 많다. 태조 때에 김부와 혼인한 2명의 공주(첫째와 아홉째)를 제외하고, 충선왕이 동성혼 금혼령을 내린 이후인 충혜(재위 1330~1332, 1339~1344) ~ 공양왕(재위 1389~1392)까지의 3사례를 제외하면 동성혼이 아닌 사례는 2건이며, 첫 사례는 정민상(井民相)에게 출가한 현종과 궁인 박씨 소생의 딸 아지(阿志)이다. 이는 왕실에 있어서도 생모의 신분에 따라 왕실의 순수 혈통인 정비 출생 공주는 왕실종친에게, 그렇지 못한 서녀는 왕실 외의 귀족에게 출가시켰던 사례일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희종(재위 1204~1211)녀 덕창공주이다. 덕창공주는 무신집권기 최충헌의 위력으로 그 아들인 영가후(永嘉侯) 최성(崔珹)과 혼인하였다. 이는 고려시대에 정비 소생 공주가 종실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유일한 사례이다.[25] 이렇듯 공주의 혼인은 대부분 왕실내 동족혼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왕은 왕족 아닌 귀족에게서 왕비를 맞아들이면서 공주만은 고려 말까지 왕족과의 족내혼을 지속하였다. 그 이유는 왕씨는 왕종[용종(龍種)]이라는 의식에 따라 왕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왕실의 특권의식, 왕통의식을 강화시켜 왕실의 신성화,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방안이었을 것으로 추측해본다.[26] 또 다른 이유는 부계 우선의 친족의식이 작용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다. 부계가 왕족이면 모계와 상관없이 왕족이 되지만 모계가 왕족이라도 부계가 왕족이 아니고 귀족이면 그 자손은 귀족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공주와 그 후손을 왕족의 신분으로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은 공주를 왕실 종친과 혼인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왕은 일부다처적 혼인관계 속에서 종친녀와 혼인하고, 그 외 귀족녀와 혼인함으로써 족내혼의 기본 틀을 깨지 않으면서 혼인을 할 수 있지만, 공주는 한번 출가하면 끝나기 때문일 것이다.[27]

---

25) 정용숙, 1987,「고려왕실 족내혼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8쪽.
26) 정용숙, 위의 논문, 136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공주 족내혼 초기의 부마는 근친 중심이었으나, 후대로 가면서 점차 부계는 4촌 이상으로 멀어지고 모계는 4촌 혹은 5촌 관계로 왕실과 가까운 혈족이 그 혼인 대상이었다.[28] 덕종(재위 1031~1034)부터는 현종의 자녀 간과[29] 혼인을 맺고 이들 자손들과만 연속적 교환혼을 함으로써 부마를 계속 배출하는 왕족 통혼 가계가 형성되었다.[30]

왕실과 통혼하는 부마 가계는 여타의 귀족 가계에 비해 좀 더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장자 중심의 왕권 강화와 모계세력의 도태 등의 영향으로 왕위는 계승할 수 없었으며, 부마의 영향력이 발휘된다 싶으면 다른 종실 가계로 통혼을 하면서 최대한 통혼 가계의 영향력을 줄였으며, 왕실 기강을 가장 어지럽히지 않을 가계와 통혼하였다.[31]

왕실과 가까운 혈족(통혼 왕족 가계) 모두가 공주의 혼인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공주와의 혼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반란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반란

---

27) 정용숙, 1987,「고려왕실 족내혼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37쪽.
28) 정용숙, 위의 논문, 120쪽.
29) 김은영, 2002,「고려중기의 부마」, 숙명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8쪽.
왕족 통혼가계는 평양공 기의 가계와 문종의 가계로 나눌 수 있으며 문종의 가계는 문종의 아들인 조선공 수와 진한후 유의 가계로 정리할 수 있다.
德宗-毅宗代 駙馬
德宗 ① 檢校太師 忠= 公主 : 현종의 아들
文宗 ② 扶餘公 遂 = 積慶宮主; 문종의 아들
③ 樂浪伯 瑛 = 保寧宮主 : 평양공 기의 아들
宣宗 ④ 睿宗 = 敬和王后: 숙종의 아들
肅宗 ⑤ 廣平伯 源= 安壽宮主 :문종의 아들인 조선공 도의 아들 -문종계
⑥ 淮安伯 沂= 大寧宮主 :문종의 아들인 진한후 유의 아들 -문종계
⑦ 晋康伯 演= 福寧宮主 :문종의 아들인 진한후 유의 아들 -문종계
⑧ 承化伯 禎= 興壽宮主 :평양공 기(현종의 아들)의 아들인 낙랑백 영의 아들 -현종계
睿宗 ⑨ 安平伯 璥= 興慶宮主 :조선공 도(문종의 아들)의 아들인 광평백 원의 아들 -문종계
⑩ 漢南伯 杞= 承德宮主 :승화백 정(낙랑백의 아들)의 아들 -현종계
仁宗 ⑪ 洪化侯 瑛 = 承德宮主 :강릉후 온(조선공 도의 아들)의 아들 -문종계
⑫ 江陽公 瑊 = 德寧宮主 :대원공 효(문종의 아들인 숙종의 아들)의 아들
⑬ 信安侯 瑊 = 昌樂宮主 :한남백 기(승화백 정의 아들)의 아들-현종계
⑭ 邵城侯 珙 = 永和宮主 :사공 유(숙종의 손자)의 아들 -문종계
毅宗 ⑮ 延昌公 玶 = 敬德宮主 :한남백 기(승화백 정의 아들)의 아들-현종계
⑯ 咸寧伯 璞 = 安貞宮主 :한남백 기(승화백 정의 아들)의 아들-현종계
⑰ 廣陵侯 沔 = 和順宮主 :홍화후 영(강릉후 온의 아들)의 아들-현종계
30) 김은영, 위의 논문, 30쪽
31) 김은영, 위의 논문, 3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여(黨與)를 만들거나 무술에 관심을 가지고 무뢰배들과 몰려다니는 경우, 왕족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자는 왕실혼인에서 제외되었다. 반란에 참여하거나 반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인물은 종친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고 처벌되었으며, 이 경우 왕실과의 혼인관계는 자연 단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외 경제적 궁핍도 왕실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32]

혼인 적령기에 있는 종친의 남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공주의 혼인 대상은 그 가운데서 선정하였을 것이다.[33] 부마가 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배경과 개인의 외모, 인품, 학식, 나이 등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했을 것이다.『고려사』「종실열전」의 현종 이후 부마 관련 기사 중 개인의 신상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기록이 있는 5명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여후 수(扶餘侯 遂)

부여후(扶餘侯) 왕수(王遂)는 문종(文宗) 34년에 부여후(扶餘侯)로 책봉되었다.

“ ... 아아! 너 왕자 왕수(王遂)는 흘연(屹然)히 빼어난 풍모, 지순하고 온화한 천품을 타고나서 글을 읽으면 열행을 함께 보았고 시(詩)를 지으면 칠보(七步)에 바로 만들어 내었다...”[34]

2) 안평백 경(安平伯 璥)

왕경은 안평백(安平伯)에 책봉되고 예종(睿宗)의 딸 흥경공주(興慶公主)에게 장가들었는데 명종(明宗) 7년에 졸하였다. 성품이 조용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경전(經傳)·기예(技藝)·방기(方技)에 해박하지 않음이 없었고 또한 서화(書畵)도 교묘하였다. 그러나 석전(釋典)을 좋아하여 임종 때에는 선승(禪僧)을 본받아 게(偈)를 짓고 졸하니 나이가 61세였다.[35]

---

32) 정용숙, 1987,「고려왕실 족내혼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21쪽.
33) 정용숙, 위의 논문, 121쪽.
34)『고려사』90, 열전 3, 종실, 문종.
35)『고려사』90, 열전 3, 종실, 문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공화후 영(恭化侯 瑛)

왕영(王瑛)의 자(字)는 현허(玄虛)이며 성품은 침착하고 욕심이 적었다. 그 뜻이 학문에 돈독하며 의종(毅宗) 초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가 되어 과거(科擧)에 응시하고자 청하니 왕이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겼으나 후왕(侯王)의 아들로 아래로 공사(貢士) 지방의 재사(才士)를 따르는 것은 예가 없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 인종(仁宗)의 딸 승경궁주(承慶宮主)에게 장가듦에 공화백(恭化伯)을 봉하고 은총이 매우 두터웠다. 명종(明宗)이 즉위하고 올려 후(侯)로 삼았고 만년에는 부도법(浮屠法) 불교(佛敎)을 매우 좋아하였다. 16년에 졸하니 나이는 61세이며 정의(定懿)라 시(諡)하였다.[36]

4) 광릉후 면(廣陵候 沔)

왕면(王沔)은 의종(毅宗)의 딸인 화순궁주(和順宮主)에게 장가들었으며 신종(神宗)은 수사공상주국광릉후(守司空上柱國廣陵侯)에 제수(除授)하였는데 뒤에 올려 공(公)으로 삼았다. 고종(高宗) 5년에 졸하였는데 성품은 순박하고 침착하며 필찰(筆札)이 교묘하고 기능이 많았고 더욱 의술(醫術)에 정통하여 약(藥)을 비축하며 사람 살리기를 일삼으니 질병이 있는 이는 다 그 문에 나아갔으나 조금도 꺼리는 빛이 없어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37]

5) 제안공 숙(齊安公 淑)

왕숙(王淑)을 제안공(齊安公)으로 봉(封)하였는데 사람됨이 청렴하고 바르고 전고(典故)에 습숙(習熟)하였기에 때에 종신(宗臣)의 의표(儀表)라 칭하였다.[38]

위의 사료에서는 부마의 성격과 인품으로 “온화, 조용, 침착, 순박, 청렴” 등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을 꼽고 있다. 사료가 적고 사료에 남아 있는 대부분 내용은 미화되기에 이를 근거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고려시대 부마는 무술 연마 등의 남성적인 면모보다는 학문과 재예가 출중한 온화한 성품을 가진 자로 정

36) 『고려사』 권 90, 열전 3, 종실, 문종.
37) 『고려사』 권 90, 열전 3, 종실, 문종.
38) 『고려사』 권 90, 열전 3, 종실, 현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인물을 우선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려는 왕실세력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족내혼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 부마는 왕족의 후손이었다. 부계, 모계 모두 왕족인 경우에 왕위계승권을 인정하여 광종 이후 목종까지 부마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현종의 즉위 후 왕실혼에 유교적 입장이 반영되고 왕위 계승방식이 변화됨으로써 부마는 왕위계승권을 상실하고 왕족 종실로서 예우의 대상으로 그 지위가 변화되었다. 다만 고려말까지 공주의 혼인은 대부분 왕실내 동족혼이었다. 공주의 족내혼은 왕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공주와 그 후손을 왕족의 신분으로 묶어 두기 위해서 유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왕실과 가까운 혈족(통혼 왕족 가계) 모두가 공주의 혼인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반란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당여(黨與)를 만들거나 무술에 관심을 가지고 무뢰배들과 몰려다니는 경우, 왕족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경우는 왕실혼인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부마 개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온화, 조용, 침착, 순박, 청렴” 등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의 인물을 선정하였다.

2. 왕족봉작제하 정치·경제적 지위

고려의 왕족봉작제는 부계 중심의 관점에서 왕의 적장자 중심의 질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문종대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왕족봉작제의 대상은 임관이 금지된 왕족들이었으며 봉작과 더불어 명예관직을 수여하였다. 왕족에게는 공(公), 후(侯), 백(伯)의 봉작이 수여되는데, 왕의 장자는 태자가 되어 왕위를 계승하고, 나머지 왕의 왕자에게는 후를, 부마에게는 백을, 비부(妃父)에게는 후를 초봉하였고 공·후·백의 자식에게 봉작을 상속시키지 않았다.[39] 현종 이전 부마가 왕위까지 오를 수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봉작제로 부마의 지위는 이전보다 낮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는 왕의 직계가족 및 왕의 친인척들이 최고의 작위와 봉록은 물론 중요 관직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부터는 녹봉과 작위만 후하

39) 김기덕, 1986,「고려조의 왕족봉작제」,『한국사연구』52, 47-96, 68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게 주고 사관(仕官)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에 이르렀다.

문종 이후 부마에 대한 명예관직으로는 삼공(三公), 태위(太衛), 태보(太保)와 같은 삼사(三司)·삼공직(三公職)과 상서령(尙書令) 관직을 주로 수여하였다. 여기서 삼사·삼공직은 정 1품의 최고 품직이었으며, 상서령도 종1품과 종2품에 해당하는 높은 직위이였다. 이러한 부마의 직위는 왕이 교체되거나, 부마가 국구(國舅)가 되거나, 특별한 공이 인정될 때 진급하거나 관직이 첨가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진봉의 순서는 대부분 사공(司空)→사도(司徒)→태위(太尉)→태보(太保)→태부(太傅)→태사(太師)였다. 하지만 이러한 검교직은 실직(實職)이 아닌 산직(散職)이었고, 삼사와 삼공, 상서령직도 명예직으로서 실제로 정치적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40]

고려 왕족봉작제는 왕족을 대상으로 하였고 왕족들은 족내혼을 통해 연결되어 있기에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왕자, 부마, 국구들이 독자적인 부(府)를 설치하고 필요한 관료들을 배속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41] 고려왕실이 족내혼을 하였기에 왕자, 부마, 왕의 친가와 외가, 처가, 국구 등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없었다. 또한 봉작이 상속되지 않아 그 수가 많지 않았기에, 왕실을 관리하는 관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각각 부를 개설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이다. 문종대의 관제에 의하면, 왕자들의 부에 배속되는 관료에는 종8품 1명, 종9품 1명, 서예(書藝) 1명이 있었다. 이는 충렬왕 34년(1308)의 관제 개혁에 의하여 정5품 1명, 정6품 1명, 종6품 1명, 정7품 1명으로 바뀌었으며, 국구와 부마들에게도 부를 설치해주고 종8품과 종9품 각 1명의 관료를 배속시켰다.[42]

두 번째로, 고려의 봉작은 상속되지 않았지만 고려 공주의 혼인이 철저히 족내혼을 취했기 때문에 당대에 한정될 뿐인 봉작이 연속될 수 있었다. 만일 공·후·백의 자식이 공주의 부마 또는 비부가 될 경우 백이나 후로 봉작되었고, 이들의 다음 대는 사도 · 사공을 수여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문종의 동모제(同母

40) 김은영, 2002,「고려중기의 부마」, 숙명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6쪽.
41)『고려사』77, 지 31, 백관 2.
42) 신명호, 1999,「조선초기 왕실 편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5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弟)인 평양공 기 가문의 경우 계속 부마나 비부가 나옴으로써 고려말까지 계속 왕족 봉작을 받았다.[43] 사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마의 자식이 부마나 비부가 되지 못하면 이들은 왕족에서 탈락되고 이들은 사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44]

부마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인 식읍과 녹봉이다. 식읍에 대한 내용은『고려사』의「백관지」에 <표2>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부마는 초봉으로 백을 봉작 받았기에 700호 이상에 해당된다.

<표2>『고려사』「백관지」작조의 식읍규정[45]

작명	식읍규정
공	식읍 3천호(정2품)
군공	식읍 2천호(종2품)
현후	식읍 1천호(정5품)
현백	식읍 700호(정5품)
개국자	식읍 500호(정5품)
현남	식읍 300호(종5품)

문종대 왕자에게 식읍을 지급한 내역과 숙종 부마의 작위에 따른 식읍 지급에 관한 기록이 있는『고려사』「종실열전」을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왕자 및 부마 식읍 지급 내역[46]

대상자	지급 내역	비고
계림후 왕희(숙종)	식읍 1천호	문종 왕자
평양후 왕수	식읍 1천호	문종 왕자
금관후 왕비	식읍 1천호, 식실봉 500호	문종 왕자

43) 김기덕, 1986,「고려조의 왕족봉작제」,『한국사연구』52, 47-96, 93쪽.
44) 김기덕, 위의 논문, 95쪽.
45)『고려사』권 77, 지 31, 백관2, 작.
46)『고려사』권 90, 열전 3, 종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변한후 왕음	식읍 2천호		문종 왕자
조선후 왕도	식읍 2천호, 식실봉 500호		문종 왕자
부여후 왕수	식읍 1천호	식실봉 300호	문종 왕자
	식읍 2천호		문종 부마
낙랑백 왕영	식읍 2천호		문종 부마
광평백 왕원	식읍 2천호, 식실봉 500호		숙종 부마
회안백 왕기	식읍 2천호, 식실봉 300호		숙종 부마
진강백 왕연	식읍 300호		숙종 부마
승화백 왕정	식읍 2천호, 식실봉 300호		숙종 부마

위 <표3> 내용을 보면 부마 6명 중 5명이 식읍 2,000호를 받았고, 진강백 왕연만이 300호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백관지」작조와 부합되지는 않는다. 또한 경종(재위 975~981)이 재위1년(976) 송으로부터 책봉 받으며 식읍 3천호를 받은 것을 생각해보면 꽤 많은 규모로 식읍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식읍은 국가에서 왕족·공신·봉작자(封爵者)에게 수조지(收租地), 수조호(收租戶)를 지급한 일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고려에서는 허봉(虛封)과 실봉(實封, 식실봉(食實封))이 있었는데 왕실이나 특별한 공훈자를 제외하고 일반 문·무관의 봉작자는 사실상 식실봉(食實封)이 지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는 식읍 대신 봉작에 따라 일정한 녹봉(祿俸)이 별도로 더 지급된 듯하다.[47]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며 제도를 개편하면서 비록 허봉이지만 왕족들의 경제적·명예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중국과 대등한 황제국임을 표방하며 왕조의 자부심을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어떠하였던 간에 문종 이후 의종까지의 부마들은 대개 2천호 정도의 식읍을 지급받은 것으로 왕족인 부마는 공신에게 지급하는 식읍보다 많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48]

47)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식읍
48) 김은영, 2002,「고려중기의 부마」, 숙명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0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녹봉[49] 지급은 사료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드나, 『고려사』 「식화지(食貨志)」의 내용을 보면 부마 봉작에 따른 규정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고려사』 종실 녹봉 규정[50]

문종대 녹봉	공	460석 10두
	후	400석
	상서령 후	350석
	수태위(守太尉) 후	300석
	수사도 사공(守司徒·司空) 백	240석
	사공	220석
인종대 변정 녹봉	국공(國公)	600석
	제공·상서령(諸公·尙書令)	350석
	제후(諸侯)	300석
	제백(諸伯)	240석
	제수사공(諸守司空)	220석

문종대 녹봉규정으로는 부마의 초봉인 백부터 최고 작위인 공까지 녹봉을 240석에서 460석 10두까지 지급하였고, 인종대 변정 녹봉으로는 240석에서 350석까지 지급하였다. 이는 문종대 종1품인 중서령과 상서령의 녹봉이 400석이었고, 종3품에 해당하는 전중감 상서좌우승, 전중감의 녹봉이 233석 5두였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최상위의 경제적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1]

49)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녹봉
녹봉은 과전(科田)이나 직전(職田) 등의 수입과는 구별되며 연봉(年俸)이나 월봉(月俸)으로 받는 미곡·포(布) 등 현물로 지급되던 급료제도이다. 녹봉은 '녹(祿)'과 '봉(俸)'으로 구별된다. 고려시대에는 비주(妃主)·종실(宗室)이나 문무백관에게는 녹이 주어지고, 잡직·서리·공장에게는 상봉(常俸)이 주어졌다.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고려시대의 것을 계승해 녹과(祿科)와 월봉이 구별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녹은 수록(受祿)·급록(給祿)·녹과 등으로 표기되고, 봉은 상봉·월봉·급봉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봉 대신 '요(料)'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녹은 3개월마다 지급되는 경우인 사맹삭(四孟朔)과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아마도 수직관리(受職官吏)를 우대하는 급료제이며, 봉이나 요는 특수 관직이나 잡직·임시직 등에 대한 급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50) 『고려사』 권 80, 지 34, 식화3, 녹봉 종실녹.
51) 『고려사』 권 80 ,지 34, 식화3, 녹봉 문무반녹.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왕족에 대한 봉작은 공(公), 후(侯), 백(伯)의 봉작이 수여 되는데 부마에게는 백을 초봉하였다. 부마에게는 삼사·삼공직(정 1품)과 상서령(종1·2품)과 같은 높은 명예관직을 수여하였다. 이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명예적 대우를 해주며 정치적 권한행사를 제한 한 "종친불사(宗親不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마의 영향권을 제한한 것이었다.

부마에 대한 경제적 예우인 식읍과 녹봉의 지급은 문종 이후 의종까지의 부마들은 대개 2,000호 정도의 식읍을 지급받았다. 문종대 녹봉규정으로는 녹봉을 240석에서 460석 10두까지 지급하였고, 인종대 변정 녹봉으로는 녹봉을 240석에서 350석까지 지급하였다. 공에 해당하는 460석을 지급받은 문무 관료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 최상위의 경제적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려시대 부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려의 부마는 왕위계승권은 상실되었지만 왕족으로서 최상위 지위와 예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조선시대 부마

1. 신료로서 부마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유교를 국가 통치이념으로 하며 혼인의 형태가 변화되었다. 고려시대 혼인은 족내혼과 일부다처제였고, 적실과 첩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조선 개국과 함께 왕녀의 혼인은 왕족내 족내혼에서 왕족이 아닌 신료의 자제와의 이성혼으로 변화되었고, 적서를 차별하였다.

조선시대 혼인 형태의 변화는 부마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 부마는 왕족이면서 왕녀의 남편이었지만 조선시대 부마는 왕족이 아닌 일반 사대부가의 자제로 그 신분적 지위가 처인 왕녀에 종속되고, 왕녀의 남편으로서 종실이었지만 그 신분은 고려시대 왕족인 부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 또한 개국 초 혼란기에는 왕실 최측근 보좌세력이면서 역모 등에 연루될 수 있어서 감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유교 정치에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은 왕의 통치원리 중 하나인데 치인은 왕실(친인척)로부터 시작된다. 왕이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친족부터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왕실혼은 왕조시대 왕의 최측근 세력인 왕실의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의식으로 새로운 왕실 구성원인 부마를 맞이하는 것은 국가적 중요 사항이었다. 이런 이유로 왕실의 안녕과 유지를 위해 부마를 아무나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 장차 왕녀의 시부(媤父)가 될 신료의 인품과 국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 중에서 부마를 간택하였다.[52] 부마와 부마의 가문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당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조선초 부마 간택은 태종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부마와 부마 가문의 선택 기준은 세조 이전과 이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조 이전에는 일부 공신 자제 출신의 부마들이 왕실과 본인 집안의 배경을 믿고 역모 등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문제를 일으키자 성품이 겸손한 자들로 왕실에 누를 끼치지 않고 역모에 휘말리지 않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 부마를 선정하였다. 세조 이후에는 집권에 협력하였던 공신의 자제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신료의 자제를 선택하였다. 부마와 부마가문의 간택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제시된 사료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조선 개국 후 최초의 부마 간택은 태종(재위 1400~1418) 때 시작되었다. 당시 태종은 이미 이백강, 조대림, 권규가 부마로 있었다. 태종의 기존 세 부마는 공신의 자제들이었다. 부마 이백강(李伯剛)의 부친 이거이(李居易)는 태종이 즉위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태조(재위 1392~1398) 부마 이애(李夔)의 동생이다.[53] 부마 조대림(趙大臨)의 부친 조준(趙浚)은 태조대 영의정을 지냈던 개국·정사공신이다. 부마 권규(權跬)의 부친 권근(權近)은 좌명공신이자 찬성사·예문관 대제학 등을 지냈던 인물이다. 태종은 이백강이 부마로 선정된 후 다른 부마들과 함께 세자전의 숙위를

52) 차호연, 2013,「조선초기 공주.옹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8쪽.
53)『정종실록』권6, 정종 2년 11월 13일(계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맡기는 등 일부 군사적인 업무를 부여하며 우대하였다.[54] 또한 태종은 자신이 신임하던 조준과 권근의 아들인 조대림과 권규를 부마로 선정하고 군사적 요직을 맡기며 신임하였다.[55] 하지만 부마 이백강은 부친 이거이가 반역을 도모한다는 죄목에 연좌되어 진주로 유배당했으며,[56] 조대림은 목인해(睦仁海)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다.[57]

이렇듯 부마가 역모 등 정치적 사건과 연루되어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 태종 15년(1415)에 왕위에 오른 뒤 처음으로 네 번째 부마인 남휘(南暉)를 간택하면서 부마 간택이 시작되었다. 조선 개국 후 첫 번째 부마를 선정하는 기준은 왕실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공신 가문의 자제가 아닌 다소 흠이 있더라도 성품이 겸손한 자이었다. 왕실 구성원을 간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양친이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58] 하지만 남휘의 부친 남경문(南景文)은 남휘가 부마로 간택될 당시 요절한 상태였고, 제1차 왕자의 난 때에 이방석(李芳碩)을 도와 태종과 대립했던 남은이 남휘의 숙조부(叔祖父)이다.[59] 이러한 집안 배경에도 불구하고 남휘가 부마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태종의 강력한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60] 이후 공신의 자제보다는 고위직을 역임하거나 왕의 신임이 두터운 신료의 자제를 부마로 간택하였다. <표5>은 태종의 부마를 정리한 것이다.

---

54) 『태종실록』권18, 태종 9년 11월 28일(병신).
55) 『태종실록』권18, 태종 9년 10월 27일(을축).
56) 『태종실록』권8, 태종 4년 10월 18일(병술).
57) 『태종실록』권16, 태종 8년 12월 5일(무인).
58) 「육전조례 」, 「예전」 책명조, “公主翁主 下嫁時 禁婚有命 則禁婚外許婚諸條 稟啓(國姓及他貫籍李姓 當代異姓八寸親 寡家子及 只 有父者 形體有疾者 出繼者之已出立案者 竝勿禁婚 家長之遭故者 及 鄕品家僉萬戶之類 年歲之已過限者 皆許婚) 後移文京外.”.
59) 『태조실록』 권14, 태종 7년 8월 26일(기사).
60) 차호연, 2013, 「조선초기 공주.옹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2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5> 태종의 부마와 부마의 부친[61]

	왕녀	왕녀모	부마	부마부친	부마부친의 역임관직
1	정순공주	원경왕후	이백강(李伯剛)	이거이(李居易)	참찬의정부사
2	경정공주	원경왕후	조대림(越大臨)	조준(越受)	영의정부사
3	경안공주	원경왕후	권규(權跬)	권근(權近)	참찬의정부사
4	정선공주	원경왕후	남휘(南障)	남경문(南景文)	의랑
5	정혜옹주	의빈권씨	박종우(朴從愚)	박신(朴信)	의정부찬성사
6	정신옹주	신빈신씨	윤계동(尹季童)	윤향(尹向)	형조판서
7	정정옹주	신빈신씨	조선(趙璿)	조말생(越末生)	병조판서
8	숙정옹주	신빈신씨	정효전(鄭孝全)	정진(鄭鎭)	형조판서
9	소선옹주	신빈신씨	변효순(邊孝順)	변상동(邊尙同)	감찰
10	숙혜옹주	소빈노씨	이정녕(李正掌)	이사후(李師厚)	좌승지
11	숙녕옹주	신빈신씨	윤우(尹愚)	윤수미(尹須彌)	한성부서윤
12	소숙옹주	선빈안씨	윤연명(尹延命)	윤달성(尹達誠)	현감
13	숙경옹주	신빈신씨	윤암(尹巖)	윤태산(尹太山)	생원
14	경신옹주	선빈안씨	이완(李梡)	이공전(李恭全)	생원
15	숙안옹주	김씨	황유(黃裕)	황자후(黃子厚)	한성부윤
16	숙근옹주	신빈신씨	권공(權恭)	권복 (權復)	병조우참의
17	숙순옹주	덕숙옹주 이씨	윤평(尹泙)	윤창(尹敞)	부윤

태종의 다섯째 부마 박종우(朴從愚)의 부친 박신(朴信)은 고려조 과거에 합격한 후 단계적으로 승진하여 벼슬을 하였고,[62] 태종이 즉위하자, 승추부좌부승지(承樞府左副承旨)에 임명되는 등 고위직을 수행하다 그의 아들 박종우가 세종 1년(1419) 태종의 다섯째 부마로 간택되었다.[63] 여섯째 부마 윤계동(尹季童)의 부친

61) 차호연, 2013,「조선초기 공주.옹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쪽 표5.
62)『세종실록』권105, 세종 26년 윤7월 12일(기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윤향(尹向)은 사헌부집의, 대사헌, 한성부윤,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며 단계적으로 관직이 승진하였다.[64] 태종 17년(1417) 죄를 지어 유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품과 안정적으로 관직을 수행했던 점 등이 인정되어 그의 아들 윤계동이 태종의 서녀 정신옹주의 남편으로 간택되었다.[65] 일곱째 부마 조선(趙璿)의 부친 조말생(趙末生)[66]은 태종과 세종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아 병조판서, 중추원사, 예문관 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열세번째 부마 윤암(尹巖)의 부친 윤태산은 생원이 된 후 출사하지 않았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윤암의 경우 세종 14년(1432) 숙경옹주와 숙안옹주의 부마에 대해 논의한 기사로 미루어 볼 때[67] 부친 윤암의 집안에는 이미 두 명의 부마를 배출하였다. 태종의 두 번째 서녀 정신옹주의 남편인 윤계동(尹季童)과 일곱 번째 서녀 숙녕옹주의 남편인 윤우(尹愚)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부친의 지위가 아닌 왕실과의 관계로 인해 부마로 간택될 수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68]

세종(재위 1418~1450) 또한 태종 때와 같이 부마들이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세종 6년(1424) 태종의 부마 남휘가 간통사건에 휘말렸고,[69] 태종의 부마 윤계동은 매를 훔친 죄로 직첩이 회수되었고 풍양에 안치되었다.[70] 또한 태종의 부마인 윤연명(尹延命)이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71] 부마들이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같이 부마가 각종 사건에 연루되자 세종은 부마를 정치적 영향력이 적거나 혼맥이 없는 가문의 자제 중에서 선택하였다. <표6>은 세종-문종의 부마를 정리한 것이다.

---

63) 차호연, 2013,「조선초기 공주.옹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3쪽.
64)『태종실록』권35, 태종 18년 5월 17일(병인).
65)『태종실록』권34, 태종 17년 9월 21일(계유);『태종실록』권35, 태종 18년 1월 26일(정축);『태종실록』권35, 태종 18년 2월 25일(병오).
66)『세종실록』권116, 세종 29년 4월 27일(무오).
67)『세종실록』55권 세종 14년 1월 13일(계유);『세종실록』권 56, 세종 14년 6월 6일(을미).
68) 차호연, 위의 논문, 24쪽.
69)『세종실록』권25, 세종 6년 7월 18일(신묘).
70)『세종실록』권30, 세종 7년 10월 21일(병술).
71)『세종실록』권54, 세종 13년 12월 5일(병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6> 세종-문종의 부마와 부마의 부친[72]

	왕녀	왕녀모	부마	부마부친	부마부친의 역임관직
세종	정의공주	소헌왕후	안맹담(安孟聃)	안망지(安望之)	관찰사
	정현옹주	상침송씨	윤사로(尹師路)	윤은(尹垠)	목사
	정안옹주	숙원이씨	심안의(沈安義)	심선(沈璿)	귀감
문종	경혜공주	현덕왕후	정종(鄭悰)	정충경(鄭忠敬)	동부승지
	경숙옹주	사칙양씨	강자순(姜子順)	강휘(姜微)	

세종의 부마 안맹담(安孟聃)의 부친 안망지(安望之)는 함길도 관찰사 등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지만, 혼담 전 이미 사망하였고 왕실과의 혼맥도 맺지 않은 가문 출신이다. 부마 윤사로(尹師路)의 부친 윤은(尹垠)은 목사를 역임하였을 뿐 정치적 영향력은 없었다. 부마 심안의(沈安義)의 부친 심선(沈璿)은 현감에 재직 중이었다. 문종(재위 14550~1452) 부마 정종(鄭悰)의 부친 정충경(鄭忠敬)은 혼담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부마 강자순(姜子順)의 부친 강휘(姜微)는 정치적 활동이 없었다.[73]

계유정란으로 세조(재위 1455~1468)가 집권하자 부마의 간택은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세조의 집권에 협력하였던 자들을 공신으로 삼고 그 공신들의 자제를 부마로 선정하였다.[74] 세조는 자신을 지지하는 정인지와 같은 인물의 자제를 부마로 선택하여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표7>은 세조, 덕종, 예종의 부마를 정리한 것이다.

72) 차호연, 2013,「조선초기 공주.옹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4쪽 표6.
73) 차호연, 위의 논문, 25쪽.
74) 차호연, 위의 논문, 26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7> 세조-예종의 부마와 부마의 부친[75]

	왕녀	왕녀모	부마	부마부친	부마부친의 역임관직
세조	의숙공주	정희왕후	정현조(鄭顯祖)	정인지(鄭麟趾)	영의정
덕종	명숙공주	소혜왕후	홍상(洪常)	홍응(洪應)	도승지
예종	현숙공주	안순왕후	임광재(任光載)	임사홍(任士洪)	도승지

세조의 왕녀인 의숙공주는 정현조(鄭顯祖)와 혼인하였다. 정현조의 부친 정인지(鄭麟趾)는 세조의 집권에 주도적으로 협력한 인물이다. 정인지는 태종 14년(1414) 문과에 장원 급제한 후 각종 요직을 역임하며, 태종과 세종의 신임을 받았다. 또한 계유정난 때 세조 집권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로로 좌의정에 제수되었고, 정난공신(靖難功臣) 등에 책록되었으며,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에 봉군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76]

덕종과 예종(재위 1468~1469)의 경우도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덕종은 한확의 딸 소혜왕후와 혼인하였고, 예종은 한명회의 딸 장순왕후와 혼인하였다.[77] 덕종의 사후 세조 12년(1466)에 덕종의 왕녀인 명숙공주는 홍응(洪應)의 아들 홍상(洪常)과 혼인하였다. 부마 홍상의 부친 홍응은 세조 9년(1463)에 도승지를 역임하였고 영응대군과 함께『명황계감(明皇誡鑑)』을 국역하였으며,[78] 세조 12년 발영시(拔英試)에 독권관(讀券官)으로 참여하는 등 출중한 재주로 신임을 받았다.[79] 예종의 왕녀인 현숙공주는 예종 사후에 임광재(任光載)와 혼인하였다.[80] 부마 임광재의 부친 임사홍은 세조 2년(1456) 문과에 급제한 후 중국어에 능통하여 몇 차례 명나라에 다녀오는 등의 이력을 갖고 있었으며 성종이 즉위하자 임광재의

75) 차호연, 2013,「조선초기 공주.옹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6쪽 표7.
76)『세조실록』권2, 세조 1년 9월 5일(정축).
77) 차호연, 위의 논문, 27쪽.
78)『세조실록』권30, 세조 9년 5월 15일(계묘).
79)『세조실록』권39, 세조 12년 5월 9일(기묘).
80)『성종실록』권62, 성종 6년 12월 16일(신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부인 임원준(任元濬)이 좌리공신에 녹훈되었다.[81]

부마의 가문과 부친의 정치적 지위를 중요시하는 경향은 성종(재위 1469~1494) 대에도 계속되었다. 성종의 11명의 옹주들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세조 또는 성종이 즉위하는 데 공적이 있는 인물이나 정치적 요직에 있는 자들의 자제와 <표 8>과 같이 혼인하였다.

<표8> 성종의 부마와 부마의 부친[82]

	왕녀	왕녀모	부마	부마부친	부마부친의 역임관직
1	혜숙옹주	숙의홍씨	신항(申沆)	신종호(申從濩)	우승지
2	휘숙옹주	숙의김씨	임숭재(任崇載)	임사홍(任士洪)	도승지
3	공신옹주	소용엄씨	한경침(韓景琛)	한보(韓堡)	공조참판
4	경순옹주	숙용심씨	남치원(南致元)	남경(南憬)	부사
5	경숙옹주	숙의김씨	민자방(閔子芳)	민종원(閔宗元)	현령
6	정순옹주	숙의홍씨	정원준(鄭元俊)	정현(鄭鉉)	주부
7	숙혜옹주	숙용심씨	조무강(趙無疆)	조광세(趙光世)	참봉
8	경휘옹주	숙용권씨	윤정(尹鼎)	윤승세(尹承世)	부사
9	휘정옹주	숙의김씨	남섭원(南燮元)	남흔(南忻)	승지
10	정혜옹주	귀인정씨	한기(韓紀)	한형윤(韓亨允)	홍문관교리
11	정숙옹주	숙의홍씨	윤섭(尹燮)	윤승유(尹承柳)	우후

세조·예종·성종은 왕녀의 부마로 공신의 자제를 부마로 간택하였다. 기존에 왕실과 혼맥을 맺었던 가문이나 공신 가문 등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이 부마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83]

이상 조선시대 부마는 신료의 자제들 중 간택 되었으며, 조선 전기 부마 간택의 기준을 살펴보면 부마 간택 기준이 크게 변하는 시기를 세조 즉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태종 이래 세종까지 부마 중 일부가 왕실과 본인 가문의 힘을

81) 『성종실록』 권9, 성종 2년 3월 27일(경자).
82) 차호연, 2013, 「조선초기 공주.옹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6쪽 표8.
83) 차호연, 위의 논문, 29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믿고 각종 사건에 계속 연루되자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가문 중에서 문제 소지가 없을 것 같은 인물로 선택하였다. 세조 즉위 후에는 기존에 왕실과 혼맥을 맺었거나 공신 가문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큰 가문의 자제를 부마로 선택하여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부마 선택 기준은 왕실의 안녕과 당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84] 그럼에도 부마의 대부분이 부 또는 조, 부와 조가 2품관 이상을 역임한 관료의 자제들로 왕실의 위상과 격이 맞는 가문의 자제를 선정하였다.[85]

2. 봉군제 개편과 폐지에 따른 예우와 규제

고려의 왕족봉작제는 충렬왕 24년 이후 봉군제로 변화하였으며, 봉작제에서 봉군제로의 변화는 단순한 칭호상의 변화가 아니라 왕의 직계 자녀라 하더라도 일반 신하처럼 관료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며, 경제적 대우에 있어서도 관료에게 지급한 전시과와는 구별되어 식읍을 수여하였던 것을 일반관료와 같이 과전법하에 편입되었던 것이다.[86] 부마는 세종대에 종실 봉군제에서 제외되면서 왕녀의 지위에 맞춰 신료로서 부마만의 산계(散階)를 받았고 경제적 지원도 차등 지급받았다. 또한 종실로서 본인은 과거를 통해 출사할 수 없었고 재혼이 금지되었다.

태조는 즉위 후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의장법제(儀章法制)는 고려의 것을 준용한다.”는 즉위교서를 반포하였다. 태조대의 왕자 및 종친들은 재내제군소(在內諸君所)에 소속되었고 외척들과 부마는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에 소속되어 모두 봉군(封君) 등의 특권을 누렸다. 재내제군소는 고려의 제왕자부를 계승한 것이었다. 고려의 제왕자부와 조선의 재내제군소의 차이는 제왕자부는 여러 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재내제군소는 궁궐 내 한 관부로 합쳐져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하나의 관부로 합침으로써 왕자와 종친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종친으로서 예

84) 차호연, 2013,「조선초기 공주.옹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30쪽.
85) 한충희, 1996,「조선초기 의빈연구」.『조선사연구』5, 13쪽.
86) 김기덕, 1986,「고려조의 왕족봉작제」,『한국사연구』52, 47-96, 96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와 함께 정치적인 감시를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재내제군소와 이성제군소에 소속된 왕자와 종친, 외척들, 부마는 그 기준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태조의 동성 친척과 외척들, 부마의 봉군이 남발되었다. 이에 왕자와 종친, 부마, 외척을 대상으로 하는 봉작의 기준, 범위 및 녹봉지급 등이 몇 차례 정비되기에 이르렀다.[87]

부마에 대한 봉작은 태조 1년(1392)부터 6년(1397)까지 군(君)에 봉작(封爵)되었고, 태조 7년(1398)에는 후(侯)에, 정종 2년(1400)에는 군에, 세종1년(1419)~세종 26년(1444)까지는 부원군(정1품)·군을 봉작 받았다. 세종 26년에 세종은 종친, 외척, 부마, 일반 공신 모두가 군으로 봉작되면 중국의 전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통해 부마에 대한 봉군을 폐지하였다. 또한 이성제군부를 부마부(駙馬府)로 변경하여 부마만을 위한 독자적인 관부를 만들었으며 부마는 부마만을 위한 산계를 받았다.

부마 명칭도 몇 차례 변경되었다. 개국부터는 부마로 불리고, 세종 16년(1434) 4월부터는 의빈으로 불리었고, 세종 26년(1444) 7월부터 다시 부마라 불리고, 세조 12년(1466) 1월부터 부마부를 의빈부(儀賓府)로 변경하고 관계(官階)와 관련없이 부마라 통칭하였던 것을 정·종 1품을 의빈(儀賓), 정·종2품을 승빈(承賓), 정3품을 부빈(副賓) 첨빈(僉賓)으로 체계화하며[88] 또다시 의빈이라 불리었지만, 성종 13년(1482)과 성종 15년(1484)에는 의빈과 함께 부마도 왕녀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세조 12년부터 성종 15년(1484) 3월까지 의빈은 정·종1품계를 가진 공주와 옹주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관직명으로 사용되었다.[89] 성종 15년 3월 이후 왕녀와 왕세자녀의 부마에 대한 품계를 7등급으로 구성하였는데[90] 부마

87) 신명호, 1999,「조선초기 왕실편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6쪽.
88)『세조실록』권38, 세조 12년 1월 15일(무오), “駙馬府稱儀賓府, 置儀賓, 秩正.從一品, 承賓正.從二品, 副賓正三品, 僉賓正.從三品.”.
89) 한충희, 1996,「조선초기 의빈연구」,『조선사연구』5, 1~2쪽.
90)『성종실록』권164, 성종 15년 3월 21일(무신), 勘校廳啓: “儀賓二品以上稱尉, 三品堂上稱副尉, 堂下官以至四品, 稱僉尉.” 從之.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품계를 2품 이상을 모모위, 3품 당상은 모모부위, 당하관부터 4품 이상은 모모첨위로 더욱 세분화하였고 공주·옹주의 위계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또한 이 위계에 따라 경제적 혜택도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정비과정을 거쳐 종실과 공신의 봉작에는 군을 사용하였으나 부마만 위(尉)를 사용하여 구별한 것을 성종 16년(1485) 『경국대전』에 수록하고 조선말까지 계승되었다.

조선시대 부마는 왕족이 아닌 일반 사대부 집안의 자제들 중에서 선택되었기에 그 지위는 본인보다 특수 신분인 공주 · 옹주의 지위에 종속되었다. 조선시대 일반 양반가 여성의 품계는『경국대전』이전(吏典)에 '부인은 남편의 품계에 따라 봉작한다.'[91]로 되어 있지만, 공주 · 옹주의 품계는 남편을 따르지 않았다. 조선의 왕녀는 출생한 후 일정 연령[92]이 되어 하가(下嫁) 시기가 되면 작호(爵號)를 받아 공주 · 옹주로 봉작되어 외명부 품계를 받는데[93] 국왕이 즉위한 후에 출생하였다면 무품으로, 국왕이 세자 시절 동안에 출생하였다면 그 모친의 지위에 따라 군주, 현주로 각각 정2품, 정3품이 책봉되었다. 세자에서 국왕으로 즉위하면 군주, 현주는 공주, 옹주가 되었다. 즉, 공주 · 옹주의 품계는 남편의 관직과는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부마가 부인에게 영향을 받았다.『경국대전』의빈부조(儀賓府條)에 따르면, 공주의 부마는 종1품에 초수(初授)되었고, 옹주의 부마는 종2품에 초수되었다.[94] 부마는 다 같은 국왕의 사위일지라도, 자신과 혼인하게 되는 왕녀의 위계에 따라 그 봉작이 초수되었던 것이다.

부마에 대한 예우는『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주·옹주가 하가한 이후 왕녀인 공주·옹주의 신분에 맞게 경제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려한 것이다.

---

91)『경국대전』이전 외명부조. "封爵從夫職.".

92)『경국대전』예전 혼가(婚嫁) -혼인시기
"宗室, 則具其子女年歲及定婚家主職姓名, 告宗簿寺, 定婚家姓李者, 勿告. 宗博寺檢覈啓聞. 兩家子女年滿十歲, 方許議婚. 年六歲相差而非情願者, 勿許相婚. 加減隱諱後現者, 家長以爲婚妄冒律論."

93)『증보문헌비고』권225, 職官考 12, 內職, 外命婦, 朝鮮. "本朝外命婦無品公主翁主 正一品府夫人 王妃母 從一品奉保夫人 大殿乳母 正二品郡主 正三品縣主.".

94)『경국대전』이전 의빈부조. "尙公主.翁主者之府. 僉尉以上無定數. 尉 正一品 尉 從一品, 尙公主者初授 尉 正二品 尉 從二品, 尙翁主者初授 副尉 正三品, 尙郡主者初授 僉尉 正.從三品, 尙縣主者初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국대전』 호전(戶典)의 급조가지조(給造家地條)와 공전(工典) 잡령(雜令)에는 공주와 옹주에게 지급되는 집터의 규모가 규정되어 있는데, 봉작의 차등과 함께 토지 및 가옥의 지급 규정도 공주와 옹주를 적서로 구별하고 차등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주·옹주는 각각 30부(負), 25부의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2품 관리는 15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토지를 받았다. 가옥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공전 잡령에 있는데 공주·옹주는 각각 50칸과 40칸을 지을 수 있었다.[95] 종친과 2품 이상의 문무관리가 40칸 규모의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96]

부마가 받은 녹봉은 『경국대전』 호전의 녹과조와 직전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종 8년(1426)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자의 과전법을 제정하기를 "왕의 아들, 왕의 형제, 왕의 백부나 숙부로서 대군에 봉한 자는 3백 결, 군에 봉한 자는 2백 결, 부마로서 공주의 남편은 2백 50결, 옹주의 남편은 1백 50결이요, 그 밖의 종친은 각기 그 과(科)에 의한다." 하였다.[97]

위 내용은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에 부마로 책봉된 이들에게 주는 경제적인 혜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1품의 문무반이 150결을 받은 것에 비교해 많은 우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세종 18년(1436)부터 성종 15년(1484)까지 공주와 혼인한 부마는 220결의 과전을 받았다.[98] 최종적으로 성종 15년에 부마의 품계를 조정하면서 과전의 부족 현상을 혁파하기 위해 직전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부마가 받는 경제적 혜택도 <표9>처럼 정1품 문무반과 같이 110결로 줄어들었다.

---

95) 『경국대전』 공전 잡령. "家舍 大君六十間 王子君.公主五十間 翁主及宗親.文武官二品以上四十間, 三品以下三十間, 庶人十間.".
96) 차호연, 2013, 「조선초기 공주.옹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43쪽.
97) 『세종실록』 권31, 세종 8년 1월 27일 (임술).
98) 『세종실록』 권76, 세종 19년 1월 12일(임인), "駙馬延昌君安孟聃, 前受科田二百五十結, 亦減三十結."; 『세종실록』 권91, 세종 22년 10월 15일(갑신), "尙公主駙馬科田二百二十結, 竝準科給之, 定爲恒式.".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9>『경국대전』「호전」녹과조를 토대로 본 부마의 녹봉[99]

품계	호칭	녹과			직전
		곡식	포	저화(楮貨)	
정1품	위(尉)	97결	21포	10장	110결
종1품	위(尉)	87결	20포	10장	105결
정2품	위(尉)	81결	19포	8장	95결
종2품	위(尉)	76결	19포	8장	85결
정3품 상	부위(副尉)	67결	17포	8장	65결
종3품 하	부위(副尉)	64결	17포	8장	60결
종3품	부위(副尉)	60결	16포	6장	55결

조선시대 부마는 본인보다 더 지위가 높은 특수 신분인 왕녀의 남편으로서 받는 명예적·경제적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왕실의 안녕과 왕녀의 신분 유지를 위해서 재혼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등의 각종 규제 또한 감당해야 했다.

부마의 재혼은 금지되었고 작첩(취첩)에도 제한이 있었다. 특수한 신분인 왕녀에 대한 예우와 봉사(奉祀), 재혼한 부마 후손의 적서구분이라는 논쟁점이 있어 부마의 재혼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100]

부마의 재혼 문제는 왕녀의 봉사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부마의 재혼을 불허한다는 것은 부마의 재혼이 허용될 경우 존귀한 신분인 왕녀가 일반 사대부가의 아녀자와 동격이 되어 왕실의 특수 신분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 초기에도 부마의 재혼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마의 재혼 문제는 숙종대에 법령으로써 재혼 금지로 정리되면서[101] 더 이상 부마의 재혼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다. 자손이 없는 경우 『경국대전』에는 입후와 관련해서 "적처와 첩이 모두 아들이 없으면 관에 고하고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세워 후사를 삼

99) 차호연, 2013,「조선초기 공주.옹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6쪽 표 11.
100) 박진, 2017,「조선초기 의빈의 재혼문제와 그 자손에 대한 처우」,『역사와실학』62, 42쪽.
101)『숙종실록』권12, 숙종 7년 7월(계해) "東平尉 鄭載崙以主歿子夭上疏 援班城尉 姜子順 河城尉 鄭顯祖例 乞再娶…已而臺臣言其不可 遂寢其命 仍定儀賓毋得再娶之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다.[102]"고 하였으며, 봉사와 관련해서는 "만약 적장자가 후사가 없으면 중자(衆子)로 제사를 받들게 하고, 중자가 후사가 없으면 첩자(妾子)로 제사를 받들게 한다.[103]"고 하였으나 이는 왕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왕녀와의 사이에서 자손이 없는 경우 첩자로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봉사를 위해 후사만 세우게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104].

부마의 취첩은 왕실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였지만, 그의 처부(妻父)가 국왕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다른 사대부들과 같이 첩을 쉽게 둘 수 없는 처지였다. 만약 부마가 왕녀 사후에 재혼한 경우는 사대부가 여성이어도 모두 취첩으로 판단되었다.[105]

부마는 종친불사의 원칙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조선초기에는 부마들이 왕의 측근으로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했던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성종 대에 이르러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중앙 관직과 정치제도가 정비되면서『경국대전』이 반포되었고, 반포 이후부터 부마가 과거에 응시하는 일은 철저히 제한되었다. 대신 부마만을 위한 산계를 받았다. 부마의 사환을 금지하는 명분은 이들을 보호하여 친족 간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부마가 사환하여 만약 잘못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는데, 법대로 처벌하면 친족 간의 의가 상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법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왕이 친족 간의 의리를 지키고 법도 보호하려면 이들에게 높은 봉작과 후한 녹봉을 주고 직사는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였다.[106]

다만 부마 본인은 성리학적 의리 명분에 따라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없었으나 왕의 외손인 부마의 자손은 동성친이 아닌 이성친이기에 종친불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과거를 통해 사환을 할 수 있었다. 일반 종친이 4대가 지나야만 과

102)『경국대전』예전 입후.
103)『경국대전』예전 봉사.
104)『증보문헌비고』제 86, 禮考 3, 立後.
105) 박진, 2017,「조선초기 의빈의 재혼문제와 그 자손에 대한 처우」,『역사와실학』62, 42쪽.
106) 신명호, 1999,「조선초기 왕실편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56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거를 치르고 관직에도 나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부마의 자손은 왕의 이성 후손 중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과거를 치를 수 있었다. 또한 돈녕부의 관직을 제수 받아서 관로에 진출할 수 있었다. 돈녕부는 왕실 친인척을 위한 예우기관으로서 왕과 왕비의 동성 및 이성친이 소속되는 관부로 부마의 아들은 왕의 이성친으로서 이 관부의 수직 대상자가 되었다.[107] 공주의 아들은 대군의 사위와 같이 돈녕부 종7품직을 초수하였고, 옹주의 아들은 공주 및 왕자군의 사위와 함께 종8품직을 받을 수 있었다.[108]

돈녕부 관직의 정원은 각 2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외손 이외에도 대군과 왕자군의 사위 및 공주의 사위 등이 함께 수직 대상자에 올랐기 때문에 국왕 외손의 초입사직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국왕의 모든 외손들이 돈녕부를 통해 입사(入仕)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직 진출에 있어 일정한 혜택을 누릴 자격이 부여되었던 부마의 아들들은 왕의 손자로서 남들보다 빨리 관로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이다.[10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선시대 부마는 고려시대의 부마와 달리 왕족이 아닌 신료의 자제로서 왕녀의 남편이기에 예우의 대상이었다. 부마 간택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매우 깊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왕이 관료들과 혼맥을 맺었다. 일부 부마들이 왕실과 본인 집안의 배경을 믿고 여러 사건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자 성품이 겸손한 자들로 왕실에 누를 끼치지 않고 역모에 휘말릴 문제의 소지가 없는 부마를 선정하였다. 조선의 부마는 신료의 자제로서 특수 신분인 왕녀의 위계에 따라 그 지위와 예우를 차등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마는 벼슬을 하지 못하기에 이를 위로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자식에 대한 예우를 마련하여 지원하였다. 부마의 재혼은 왕족인 공주와 옹주의 제사 문제로 인해 허락되지 않았으며, 취첩은 왕실의 허락을 통해 가능했다. 부마의 자식들은 과거를 보거나 돈녕부의 관직을 제수 받아서 관로에 진출할 수 있었다.

---

107) 박진, 2004,「조선초기 돈녕부의 성립」,『한국사학보』 18.
108)『경국대전』□이전, 京官職, 敦寧府,「王親外戚之府 宗姓九寸 異姓六寸以上親 … 大君女婿公主子初授從七品 公主王子君女婿翁主子從八品”.
109) 박진, 2017,「조선초기 의빈의 재혼문제와 그 자손에 대한 처우」,『역사와 실학』 62, 42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고려와 조선시대 부마 비교

Ⅱ장과 Ⅲ장에서 살펴본 고려와 조선시대의 부마의 지위의 변화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면 <표10>과 같다.

<표10> 고려와 조선 부마의 지위 비교표

고려	조선
혼인형태	**혼인형태**
고려초 왕실 동성 족내혼 실시 • 이유: 양측적 친속관계 부계와 모계가 모두 왕족인 자가 왕위 승계 • 결과: 부마가 왕위 계승	**왕실(왕 및 왕녀) 이성혼 실시** **왕족이 아닌 사대부가의 자식** • 부마 지위 하락
현종이후 왕의 족내혼(동성) + 이성혼 실시 • 이유: 유교 세력 등장과 외세 침입 • 결과: 부마가 왕위 계승 불가능	• 지위는 왕녀의 지위에 종속됨 - 공주부마 종1품, 옹주부마 종2품
현종이후 왕녀 족내혼(동성) 유지 • 이유: 순수혈통유지와 왕녀 자식 왕족 유지 • 결과: 동성 왕족 통혼 가계 형성	• 2품 이상의 고위 관료 가문 중 왕실의 안정과 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자제로 선택
왕족봉작제 : 왕족으로서 부마	**봉군제 폐지 : 신료로서 부마**
봉작: 공, 후, 백 • 왕자는 공, 부마는 백에 봉함 **명예직 수여** • 삼사, 상서령의 고위 명예직	조선 초: • 군->후->군->부원군 · 군에 봉해짐 • 세종26년: **봉군제 폐지** **-7등급 위(尉)의 산계를 받음.**
경제적 혜택: 식읍, 녹봉	**경제적 혜택: 과전, 녹봉**
규제 • 정치활동 금지 • 봉작 상속 안 됨. - 족내혼 통해 연속 가능	**규제** • 본인 정치활동 금지 - 부마 자손: 사환 가능, 돈녕부 수직 대상 • 재혼 금지, 취첩 허가 사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10>에서 보듯이 부마의 지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제도는 혼인제(형태)의 변화와 봉작제 실시이다.

첫 번째 혼인제(형태)에 따른 부마의 신분의 변화는 <표11>과 같다. 고려시대 왕의 사위는 혈연적으로 동성인 왕족의 일원이었다. 왕실 족내혼은 왕실의 신성화와 왕권 강화 등의 필요에 의한 정치적 행위이었다. 조선시대 부마는 혈연적 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로 왕실의 일원이 된 사람이다. 즉, 왕실가문과 신료가문의 정치적·경제적 결합이었다.

<표11> 고려와 조선 왕실 구성원의 신분

구성원		고려 시대	조선시대
왕족	왕, 왕비	왕비	왕비(처첩의 구별)
	왕자 왕녀	왕자(왕위계승자와 제왕자) 왕녀	왕자(왕위계승자와 모의 신분에 따라 적서 구별) 왕녀(모의 신분에 따라 적서 구별)
부마		왕족	신료의 자제

고려 태조는 혼인을 통하여 호족과 왕실을 규합하려 하였다.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왕실세력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셋째 아들인 광종부터 족내혼을 실시하였다. 왕실 족내혼은 왕위계승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양측적 친속제도 하에서 부계와 모계 모두 왕족인 경우 왕위계승권을 인정하는 제도에 의거해 광종 이후 목종까지 부마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종의 즉위를 기점으로 유교적 관료 세력의 부상과 함께 왕의 혼인형태가 이성혼으로 변화됨에 따라 부계중심의 왕의 적장자 승계로 왕위계승 방식이 변화됨으로서 부마의 왕위계승권이 사라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왕실혼은 왕의 혼인에 있어서 왕의 정비로는 왕실 공주(족내혼)를 맞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귀족녀(이성혼)를 여타 왕비로 맞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왕의 이성혼과 달리 왕녀의 혼인은 고려말까지 왕실 순수혈통 유지와 왕녀 자식의 왕족 유지 등을 위해 동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족내혼을 실시하였다. 즉, 고려 시대 부마는 동성 왕족 가문에서 선택되어졌기에 왕족이었다.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를 표방하면서 왕뿐만 아니라 왕녀도 왕족이 아닌 신료의 자제와의 이성혼으로 변화되었다. 고려시대 부마는 왕족이면서 왕녀의 남편이었지만 조선시대 부마는 왕족이 아닌 일반 사대부가의 자제로 그 신분적 지위가 처인 왕녀보다 낮았다. 왕녀의 남편으로서 종실 예우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신분은 고려시대 왕족인 부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 건국 초 부마 간택은 공신의 자제 중에서 선택하였으나 일부 공신 자제 출신 부마가 역모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자 일반 고위 관직의 신료 중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자의 자제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계유정란으로 세조가 즉위한 이후에는 집권에 협력하였던 공신의 자제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신료의 자제를 선택하였다. 즉 조선시대 부마는 왕족이 아닌 일반 사대부 집안의 자제들 중에서 선택되었으며 그 지위는 특수 신분인 왕녀의 지위보다 낮았다.

둘째, 봉작제 실시에 따른 변화이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만해도 왕의 가족 및 왕의 친인척들은 최고의 작위와 봉록은 물론 중요 관직을 독점하였다. 왕의 가족과 친인척은 정치적 혼란기에는 왕위를 보좌해주는 주요세력이지만 왕권이 안정화되면 이들은 왕실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제해야만 했으며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고려시대부터는 녹봉과 작위만 후하게 주고 정치적 관여를 할 수 있는 사관(仕官)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에 이르렀다.

고려시대에는 이성혼과 왕족 봉작제를 실시하면서 부마의 왕위계승권이 사라졌고, 종친불사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고려시대 왕족에 대한 봉작은 공, 후, 백의 봉작이 수여되는데 부마에게는 백을 봉하였고, 왕자, 부마, 국구 등은 각자 개부할 수 있고, 왕족봉작은 상속되지 않고 당대에서 종결되었다. 부마에게는 삼사·삼공직(정1품)과 상서령(종1·2품)의 높은 명예관직을 수여하였다. 하지만 현종 이전 부마가 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봉작제로 인해 현종 이전보다 그 지위와 위상이 낮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부마에 대한 경제적 예우로는 문종 이후 의종까지의 부마들은 대개 2천호 정도의 식읍을 지급 받았고, 문종대 녹봉규정에 따르면 부마의 초봉인 백부터 최고 작위인 공까지의 녹봉은 240석에서 460석 10두까지 지급하였고, 인종대 변정 녹봉으로 240석에서 350석까지 지급하였다. 즉, 고려의 부마는 왕위계승권은 없지만 왕족으로서 왕작을 받으며 최상위의 대우를 받았다.

조선시대 부마에 대한 봉작은 태조 1년부터 6년까지 군에 봉작되었고, 태조 7년에는 후에, 정종 2년에는 군에, 세종 1년~세종 26년까지는 부원군(정1품)· 군에 봉작을 받았다. 세종 26년에 부마에 대한 봉작제가 폐지됨에 따라 부마만을 위한 산계를 받았으며 세조 12년에 의빈(1품) 이하의 관직을 제수받았고, 성종 15년에 위(1~2품) 이하의 관직을 제수받는 것으로 정비되었다.

조선시대 부마는 고려 족내혼 시기의 왕족이 아닌 일반 사대부 집안의 자제들 중에서 선택되었기에 그 지위는 본인보다 특수 신분인 공주 · 옹주의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종 26년 이후에는 부마 봉군제가 폐지되고 부마는 왕녀의 위계에 따라 부마만의 7등급 산계를 수여 받았다. 공주의 부마는 종1품에 초수되었고, 옹주의 부마는 종2품, 군주, 현주와 혼인한 부마는 각각 정3품 부위와 정·종3품 첨위에 초수되었다. 부마의 경제적 혜택으로는 과전과 녹봉을 받았다. 부마의 녹봉은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에는 2백 50결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성종 15년에 부마의 품계를 조정하면서 정1품 문무반 신료들과 같이 110결로 줄어들었다. 조선시대 부마는 재혼이 금지되었다. 부마의 재혼 문제는 왕녀의 봉사와 관련된 것이고 부마의 재혼이 허용될 경우 존귀한 신분인 왕녀가 일반 사대부가의 아녀자와 동격이 되어 왕실의 특수 신분의 지위가 훼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 초기에도 부마의 재혼은 허용되지 않았다. 즉, 조선의 부마는 봉군 등의 왕작에서 제외되었으며 신료의 자제로서 으며, 특수 신분인 왕녀의 지위에 영향을 받아 왕녀의 위계에 따라 산계와 예우를 받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맺음말

본 논문은 기존의 시대 분절적 부마 연구를 넘어 혼인제(형태)의 변화와 봉작제 실시를 통해 고려와 조선시대의 부마 지위와 위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부마 지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밝혀 보았다.

고려와 조선은 왕조 사회였다. 왕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실 세력 기반 확충이 필요하였다. 즉, 왕을 곁에서 보좌해 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였다. 왕실혼은 왕실세력의 확장과 동시에 위협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이었다. 개국 초기는 왕실이 통치권을 확보하며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시기로 왕위계승과 왕권 장악을 둘러싸고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왕이 즉위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과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 족내혼을 통해 왕실세력을 규합하고자 하였다. 고려시대 왕의 사위는 혈연적으로 동성인 왕족의 일원으로서 족내혼을 실시하였다. 왕녀와 왕족간의 혼인은 왕실의 신성화와 왕권의 강화 등의 필요에 의한 정치적 행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세자나 대군 등 역모에 추대될 가능성이 있는 왕자군보다는 역모 연루성이 적은 부마와 그 부마 가문과의 왕실혼을 통해 왕실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왕의 사위인 부마는 혈연이 아닌 혼인관계로 왕실의 일원이 된 사람이다. 즉, 왕실가문과 신료가문의 정치적·경제적 결합이었다. 이러한 혼인제의 변화에 따라 부마의 신분은 왕족에서 왕족이 아닌 사대부가 자제로 신분적 지위가 변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만 해도 왕의 가족 및 왕의 친인척들은 최고의 작위와 봉록은 물론 중요 관직을 독점하였다. 왕의 가족과 친인척은 정치적 혼란기에는 왕위를 보좌해주는 주요세력이지만 왕권이 안정화되면 이들은 왕실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기도 했다. 왕조가 안정화되면서 부계 중심의 관점에서 왕의 적장자 중심의 질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고려시대부터 봉작제를 실시하였다. 봉작제를 통해 종실과 친인척에게 녹봉과 작위만 후하게 주고 사관(仕官)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러한 봉작제 실시로 고려 초 왕이 될 수 있었던 부마는 왕위계승권에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배제되었다. 조선시대에서는 세종26년 이전에는 봉작을 수여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부마는 왕녀의 위계에 따라 부마만의 7등급 산계를 수여받았다. 이러한 봉작제의 실시와 폐지에 따라 부마의 신분은 고려시대 왕위를 계승 할 수 있었던 지위에서 왕위계승권이 사라졌고, 조선시대에는 봉작마저 폐지되었고 지위도 신료의 자제로서 왕녀의 신분에 종속되기에 이르렀다.

혼인과 봉작제라는 두 제도를 통해 왕조사회는 왕권을 강화하며 통치권을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고려시대 왕족으로서 부마에서 조선시대 왕실의 일원이지만 신료의 자제로서 부마로 지위 변동이 나타났다. 이러한 신분 변동에도 고려와 조선은 공통적으로 왕실의 일원인 부마를 우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친인척의 정치 개입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지속, 확대해왔음을 알 수 있다.

현 시대는 왕조시대의 왕 만큼은 아니지만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왕조시대와 같이 대통령의 친인척이기에 명예직과 급여 등의 정치 경제적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되는 사회이다. 하지만 권력과 밀접하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최고 권력층의 측근들은 왕조시대 왕실의 최측근이지만 사료 속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부마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부마는 사회 이슈의 중심이 아닌 한편에서 최고 권력을 보좌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따라 자기를 통제한 도덕적 팔로우십을 갖춘 존재들로 재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에서는 이들이 자기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독려하는 한편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견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제도나 새로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등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실천적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부마 연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三國遺事』
『高麗史』
『增補文獻備考』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肅宗實錄』

김기덕, 1986,「고려조의 왕족봉작제」, 『한국사연구』 52.
김은영, 2002,「고려중기의 부마」,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용운, 1997,「고려시대 관계·관직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박진, 2004,「조선초기 돈녕부의 성립」, 『한국사학보』 18.
____ 2012,「조선초기 왕친혼 왕실 첩자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사학보』 48.
____ , 2017,「조선초기 의빈의 재혼문제와 그 자손에 대한 처우」, 『역사와실학』, 62.
____ 「『선원록(璿源錄)』에서 보이는 조선전기 국왕 후손의 신분변동」, 『고문서연구』, 53.
신명호, 1999,「조선초기 왕실 편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신채용, 2009,「영조대 탕평정국과 부마 간택」, 『조선시대사학보』 51.
_____ 2017,『조선 왕실의 백년손님』, 역사비평, 2017.
심승구, 2007,「조선시대 왕실혼례의 추이와 특성」,『조선시대사학보』, 41.
이유경, 1985,「조선 초기의 부마」,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용숙, 1987,「고려왕실 족내혼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재훈, 1996,「조선초기 왕실혼과 왕실세력의 형성」, 『한국사연구』, 95.
차호연, 2013,「조선초기 공주 옹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6,「조선 초기 공주・옹주의 봉작과 예우」, 『조선시대사학보』, 77.
한충희, 1996,「조선초기 의빈연구」, 『조선사연구』 5, 조선사연구회.

Collection @ chosun